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4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납부자가 관람을 취소할 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4항).

나.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5호).

다. '유모차'를 '유아차'로 함(안 제14조제3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

제6조제1항, 같은 항 제2호, 제3호, 제6호 및 제8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에”를 “사람에”로 한다.

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제14조제3호 중 “유모차”를 “유아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람료 등)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<u>자</u>는 별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<u>자</u>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<u>자</u> 3. 6세 이하인 <u>자</u> 및 65세 이상인 <u>자</u> 4. (생략) 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	<p>제5조(관람료 등) ① ----- -----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<u>사람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</u>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<u>사람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<u>사람</u> 3. -----<u>사람</u>----- -----<u>사람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

<p>6.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<u>자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<u>자</u></p> <p>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<u>자에</u>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(생략)</p> <p>1~2. (생략)</p> <p>3. 의무실, 수유실, <u>유모차</u>·휠체어 대여소</p> <p>4. (생략)</p>	<p><u>는 보호자 1명</u></p> <p>6. ----- -----<u>사람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-----<u>사람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유아차</u>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